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9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최수진・안상훈・김소희

김성원 · 임이자 · 이종배

김예지 · 조정훈 · 김선교

박준태 · 김장겸 · 김상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출연 또는 보조"를 "출연·보조 또는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각각 "출연금·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②
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출연 또는 보조</u> 할 수 있다.	<u>출연·보조 또는 융자</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	5
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	
에 따른 <u>출연금 또는 보조금</u> 의	<u>출연금·보조금 또는</u>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u> 융자금</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3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출연금·보조금 또는 융자금-